

가 필수시설(통합표지, 노면표시 등)

종 류	내 용	
가로형 통합표지	- 시점에만 설치	
세로형 통합표지	- 시점 또는 구역내에 설치	
해제표지	- 종점부에 설치	
정차·주차금지	- 주의표지(218)	
어린이보호구역	- 노면표시(536)	<p>어 린 이 보 호 구 역</p>
속도제한 (어린이보호구역안)	- 노면표시(518)	

나 선택시설(속도저감시설, 보행안전시설 등)

☐ 속도저감시설

종 류	내 용	
과속방지턱 ¹⁾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차량의 속도를 30km/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 설치 -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 기능을 갖는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음 	 
차로폭 좁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차로폭을 시각적 또는 물리적으로 좁게 하여 차량의 감속 유도 - 차로폭 조정을 통한 보행로 확보 	 
교차로 폭 좁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차로상의 연석 등을 확장하여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감속 유도 	 

1) 「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」에 의하면 길이 3.6m, 높이 10cm의 원호형 과속방지턱을 표준으로 적용하며, 국지도로 중 폭 6m 미만의 소로 등에서는 지역여건에 따라 길이 2m, 높이 7.5cm를 적용할 수 있음

종 류	내 용	
<p>노면 요철포장</p>	<p>- 차량에 진동이나 공진음을 발생하여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감속 유도</p>	
<p>도로 적색포장</p>	<p>- 시점부와 횡단보도 전방 등 미끄럼 방지기능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여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감속 유도</p>	
<p>서행(지그재그) 노면표시</p>	<p>- 차량이 서행할 장소에 설치하는 노면표시(520)</p>	

종 류	내 용	
회전교차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호등 없이 교차로 중앙의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교차부를 통과하는 교차로 형식 - 자동차 및 보행자 통행량, 가용 면적, 교차로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결정 	
과속·신호위반 단속장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운전자의 범규 위반 행위(과속·신호)를 단속 	
시케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차량의 감속 유도를 위해 도로의 선형을 'S'자 형태가 되도록 만든 구간 	
과속 경고 속도 표시 장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차량의 통행속도를 표시하여 과속시 경고를 하여 감속 유도 	

☐ 보행안전시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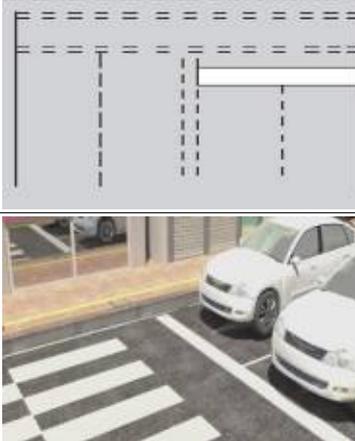
종 류	내 용		
보/차도 분리	<p>보도</p>	<p>-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설치하는 도로의 일부로 연석 또는 방호울타리, 노면표시 등으로 차로와 분리한 보행자용 도로</p>	
	<p>방호 울타리</p>	<p>- 보행로와 차도를 물리적으로 분리</p>	
	<p>시선 유도봉</p>	<p>-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보행로 확보</p>	
	<p>블라드</p>	<p>- 차량의 보도침범 억제로 보행로 확보</p>	
	<p>포장 및 길가장자리 구역선</p>	<p>- 보행로의 포장재질과 색상, 길가장자리구역선을 설치하여 보도와 차도의 구분을 명확하게 전달</p>	

□ 주·정차 금지시설

종 류	내 용	
<p>정차·주차금지 노면표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면표시(516의2) - 주·정차 절대 금지선 	 
<p>정차금지대 노면표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면표시(524) 	 
<p>블라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차량의 보도침범 억제 	 
<p>시선유도봉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 구간을 예고할 목적으로 설치 - 왕복 2차로에 중앙선이 있는 경우 등에 설치 	 
<p>주정차위반 단속장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운전자의 법규 위반 행위(주·정차)를 단속 	

□ 횡단안전시설

종 류	내 용	
<p>방호울타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, 보도와 차로를 분리 	
<p>횡단보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	
<p>고원식횡단보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차량의 감속 및 보행자의 편의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 - 보행자의 주요동선이나 자동차의 진행이 많은 도로의 단절지점에 설치 	
<p>고원식교차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차량의 감속 및 시인성, 보행자의 편의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 -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 설치 	

종 류	내 용	
교통신호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반드시 설치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방신호등은 교차로 앞으로 위치를 당기는 것으로 정지선 준수율 향상 및 보행자 안전 확보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란바탕의 신호등은 기존의 교통신호등 몸체 색상을 노란색으로 칠한 것으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 예방 	
정지선 ²⁾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차량이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하는 노면표시(530) 	
보행자작동 신호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, 보행자 교통량이 많지 않은 지점에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경우에 설치 	

2) 「교통노면표시 설치·관리 매뉴얼」에 의하면 해당지점으로부터 2~5m 전방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어린이 횡단 안전성 증대를 위해 가능한 뒤쪽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

□ 기타 안전시설

종 류	내 용	
<p>횡단보도 집중 조명시설</p>	<p>- 야간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들의 안전성 확보</p>	 
<p>도로 반사경</p>	<p>- 도로의 곡선부 시거 또는 좌우 시거가 확보되지 못한 교차로 등에서 차량이나 보행자 등 전방 상황을 사전에 확인</p>	
<p>교차점 표시</p>	<p>- 골목길 교차로에 설치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제공</p>	 
<p>교차로 알리미</p>	<p>- 차량 접근 알림과 충돌 경고를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제공</p>	
<p>옐로카펫</p>	<p>- 횡단보도에 있는 어린이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통안전장치</p>	 